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북

2024년



통계청

목 차

I. 2019년 개편 추진배경 ······ 3
Ⅱ. 조사개요4
Ⅲ. 표본설계8
IV. 조사항목 ······ 16
♡. 가계동향조사 분기 및 연간통계 작성방법 …29
Ⅵ.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 시 유의사항 ······ 30
VII. 마이크로데이터(MD) 이용 방법
VII. 마이크로데이터(MD) 이용 방법
〈부록〉
〈부록〉 1. 2019년 개편 전후 비교표40
〈부록〉 1. 2019년 개편 전후 비교표

│ 2019년 개편 추진배경

이 가이드는 2019년부터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하여 작성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이용자 가이드는 舊 이용자 가이드(~2016년) 이후 변화 내용을 추가 하였음을 밝혀 둔다

2017년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2016년)를 기존 가계수지조사에서 가계 지출통계로 특화하여 연간 주기 통계로 재편하고, 소득 및 소득분배지표는 행정자료를 통해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분기 소득통계의 정책적 필요성 등에 의해 2019년 4/4분기 까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작성하였다.

2017년 이후 학계와 정책부처를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가계경제 진단을 위한 동향 통계의 필요성 제기와 가계소득과 지출 연계(평균소비성향, 흑자율, 소득계층별 지출 실태 등)를 통한 가계수지의 종합 분석이 기능한 기초자료 요구가 지속되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소득-지출 부문을 단일 전용표본을 활용, 분기 가계동향통계로 통합하여 가구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진단 및 종합분석이 가능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의 주요 개편사항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개편내용(2019년) >

- (표본설계)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 체계를 통한 고소득층 포착 강화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 (표본체계) **6-6-6 연동표본** 운영을 통해 표본가구의 응답부담을 기존 36개월에서 12개월로 1/3수준으로 경감
- (조사방법) **가계부 조사방법**을 통해 가계소득 및 지출을 동시 파악

Ⅱ │ 조 사 개 요

① 조사 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ㅇ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제공
- 소득수준 측정 및 소득 동향 파악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가계수지 및 가구의 후생 수준 분석,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 경제·사회 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의 기준 제공

②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06호

③ **조사 연혁**

- 1942년 일제말기 처음시작
- 1951년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 대상 조사실시
- 1954년 서울 근로자 200가구 유의표본 조사
- 1960년 임의표본으로 전면개편 조사
- 1963년 한국은행에서 통계청(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하여
 5대 비목별 품목 분류방식(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에
 의한 30개 도시를 대상(조사가구 1,700개)으로 조사
- 1969년 다목적 표본 설계(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구동태표본조사에도 사용)를 적용하여 조사(대상 조사가구 1,800개)

- 1972년 다목적 표본 1차 개편
- 1975년 전 비목에 대한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이전에는 식료품비만 가계부 기장방식이며 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
- 1977년 다목적 표본 2차 개편(조사가구 4,000개로 확대)
- 1982년 가계소비지출을 5대비목에서 9대비목(식료품, 주거, 광열수 도, 가구, 피복, 보건, 교육교양오락, 교통, 기타)으로 개편
- 1983년 다목적 표본 3차 개편(조사가구 4,400개)
- 1988년 다목적 표본 4차 개편, 전국 62개 도시(조사가구 4,500개)를 대상
- 1993년 다목적 표본 5차 개편(조사가구 5,500개)
- 1995년 가계소비 지출을 9대 비목에서 10대 비목(교육·교양오락비를 교육과 교양오락비로 분리)으로 확대
- 1998년 다목적 표본 6차 개편(조사가구 5,500개)
- 2003년 다목적 표본 7차 개편(조사가구 7,500개)
 - 도시가구 대상에서 전국가구로 확대(읍면지역 조사)
- 2005년 다목적 연동표본방식 도입
- 2006년 조사방법에 전자가계부 도입, 1인 가구 조사 시작
- 2007년 다목적 연동표본 8차 개편
- 2008년 가계조사에서 가계동향조사로 명칭 개편
- 2009년 소비지출의 항목분류를 국제기준인 COICOP 분류체계로 개편
 - 가계소비지출을 10대비목에서 12대비목으로 확대
- 2014년 일부 항목분류 통합(426개 분류)
- 2017년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실시
 - (지출부문) 전용표본(연간 12,000가구, 농림어가 포함), 연간통계
 - (소득부문) 다목적표본(5,500가구), 분기통계
- 2018년 (소득부문) 기존 다목적표본 규모 확대(8,000가구)

- 2019년 소득-지출부문 통합(전용표본 월 7,200가구, 농림어가포함)
 - 분기 소득·지출 통계 및 연간 지출 통계 작성
 - (소득부문)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 실시
- 2021년 1/4분기부터 1인가구 및 농림어가를 포함하여 결과 작성 (보도자료, KOSIS 등)

④ 조사 기간 및 작성 주기

- 조사대상 기간: 매월 1일 ~ 말일
- 조사 실시기간: 매월 1일 ~ 말일
- 통계 작성주기
 - 소득통계: 분기
 - 지출통계: 분기 및 연간

5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가구: 전국의 농림어가를 포함한 1인 이상의 일반가구 중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 조사대상 제외가구: 집단가구, 음식숙박겸용주택가구, 장기출타가구, 비혈연가구, 외국인가구 등

⑥ 조사 항목

□ 가구실태

- 가구원에 관한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 ㅇ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 거처구분, 자동차보유여부, 주거에 관한 사항

□ 조사표

- 이번 달 변동사항: 이번 달 내구재 구입항목 및 가구변동 사항 기입
- 수입과 지출: 조사대상 가구에서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내용을 기입
- ㅇ 자동이체항목: 매월 반복되는 수입지출 항목을 기입
- 기타: 가구와 통신할 수 있는 글 기입

7 조사 방법

- 가구실태 항목: 조사원 면접 방식
- ㅇ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 항목: 응답자 기입 방식
 - 종이가계부: 대상가구가 종이가계부에 수입과 지출항목을 자기 기입식으로 기입한 후 조사직원이 내용 검토 후 입력
 - 전자가계부: 대상가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자가계부(PC 및 모바일)에 직접 접속하여 가계부 입력

ଃ 결과 공표

- 통계표: 전국 및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
- 공표 방법 및 시기: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 (분기 소득 및 지출) 조사대상 분기 익익월(5월, 8월, 11월, 익년 2월)
 - (연간지출) 4/4분기 공표시(익년 2월) 연간지출을 포함하여 공표
- ㅇ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공표일 이후 한 달 이내

Ⅲ 표본설계

1 개요

- 표본설계 방향
 - 전국의 모든 일반가구의 가계소득 및 지출 구조 파악에 특화된 전용표본 설계
 - 신뢰성 높은 소득(분기) 및 지출(분기, 연간) 통계 작성을 위한 표본규모 결정
 - 소득 및 지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추출방법(층화, 분류지표) 적용
- 표본 개편 연혁(2018년 이후)

		지출('18)	소득('19)	통합('19)	통합('21)	통합('22~)			
	조사명	가계동향조사(지출) 가계동향조사(소득)		가계동향조사					
	모집단	조사기간 중 대한민국에 거주 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농가 제외)	조사기간 중 대한민국에 거주 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농가 제외)	조사기간 중 대한민국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t	반 가구(농가 포함)			
Ŧ	Ē본추출틀	'15년 인총 일반조사구(1,A) 내 적격 가구* * 농가, 비혈연, 외국인 가구	'16년 인총 일반조사구(1,A) 내 적격 가구* * 농가, 비혈연, 외국인 가구	'16년 인총 일반(1.A)	'18년 등록센서스 일반(1.A)	'19년-'21년 등록센서스 일반 (1.A)			
	,	등 제외	등 제외	조사구내 적격가구' * 비혈연 외국인 가구 등 제외					
	포함률	99.8%	99.8%(일반가구 기준)	99.8%					
	표본체계	전용표본 순환표본체계(1/12)	다목적표본 연동표본체계(1/18)	전용표본 연동표본체계(6-6-6)					
	표본규모	1,200조사구	918조사구	900조사구 (1,800조사구 추출)	900조사구	900조사구			
	구역&가구	역&가구 10가구/조사구 2구역, 10가구/조사구		2구역, 8가구/조사구					
,	표본추출 방법	층화 2단 집락추출	이상추출 (경활조사구에서 재추출)	층화 2단 집락추출, Cube Method를 이용한 균형표본 추출					
	층화	11개 지역층	27개 지역층	27개 지역층					
,	목표오차	소비지출 RSE 기준 전국 1.5% 이내			소득 RSE 기준 전국 2.5%, 소비지출 RSE 기준 전국 1.5% 이내				
	대체방법	과대추출(over sampling)	가구특성(가구원수, 가구주	과대 추출(over sampling)					
	네세정답	· 조사구당 14~21가구 추출	직업)이 동일한 가구로 대체	· 제공 3~4면 출	· 제공 4~5구역 출출	· 예비가구(6~12가구)추출			
	조사기간	1개월 36개월		12개월					
	조사내용	사내용 지출 소득		소득 및 지출					
	조사방법	방법 가계부 및 면접조사 병행 면접조사		가계부 기입					
	공표주기	연간	분기	분기(소득, 지출)/연간(지출)					
	공표범위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2 모집단

○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모집단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등록센서스로 파악된, 국내 거주하는 보통·섬·아파트조사구(1, 2, A) 내 모든 가구
- 목표모집단 범위가 일반가구인 점을 고려하여, 기숙시설·특수사회 시설조사구(군대병영, 병원, 교도소 등) 내 집단가구는 조사모집단에서 제외

<	조사구특성별	조사모집단	현황	>
---	--------	-------	----	---

2020년						2021년						
	구분	조사구	가구	인구	조사구	가구	증감	증감률	인구			
		(기위)	(천개)	(천명)	(기위)	(천개)	(천개)	(%)	(천명)			
	전체	384,686	21,485	51,829	389,865	22,023	538	2.5	51,738			
	조사모집단	384,669	21,485	51,070	389,848	22,023	538	2.5	51,091			
	보통(1)	187,899	10,531	21,855	189,173	10,700	169	1.6	21,599			
	섬(2)	913	37	75	912	37	0	-0.1	72			
	아파트(A)	195,857	10,917	29,140	199,763	11,285	369	3.4	29,419			
フ <u></u>	숙·특수(9)	17	_	759	17	_	_	-	647			

○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

- 조사모집단 내 일반조사구 중 조사구 특성이 보통(1), 아파트(A)인 조사구
- 접근이 어려운 섬(2) 조사구와 비연계 조사구* 제외
 - * 비연계 조사구: 등록자료상 가구, 인구 정보는 있지만 공간정보가 없는 조사구

- 모집단에 대한 포함률(coverage)
 - 최종 표본추출들에 포함된 가구는 전체 조사모집단 대비 약 99.4%로 안정적이나, 섬 조사구가 다수 존재하는 전남은 포함률이 96.7%로 다소 낮은 수준

③ 표본 설계

- (표본체계) 전용표본, 6-6-6 연동표본체계
 - 표본 가구는 진입 후 6개월 동안 조사에 참여한 후 6개월의 휴식기를 가지며, 그다음 6개월 동안 다시 조사에 참여한 뒤 최종 종료
 - 매월 전체 표본의 1/12이 진입-종료, 1/12이 재진입-휴식으로 변동되어, 전월 대비 83.3%, 전분기 대비 62.5%, 전년 대비 58.6%의 표본이 유지
- (설계층) 27개 지역층
 - 특·광역시는 시 단위(7개), 세종을 포함한 도지역은 동/읍면 구분(20개)
- (표본규모) 총 900개 조사구, 조사구 당 8가구 → 총 7,200가구 목표
 - 안정적인 응답 표본 확보를 위해 과대추출(원표본 8가구 + 예비표본 6~12가구) 적용
- (추출방법) 층화2단집락추출
 - 일단계(PSU=조사구) : 설계층별 조사구를 균형표본추출(큐브 방법)
 - 이단계(SSU=가구) : 표본조사구 내 시작가구를 단순임의추출

< 6-6-6 연동표본체계 >

	패널						Ţ	O_i											p_i	+1					
	그룹	1		2	2	3	3	:	4		5	(5	4	4	5	 5	6			1	2	2	3	3
	구역	1 :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월	a5				·			h5	i5	j5	k5	15	g6				·			b4	с4	d4	e4	 f4
	2월	a5 6	55/							i5	j5	k5	15	g6	þ6							с4	d4	e4	f4
	3월	a5 b	5	c5/							j5	k5	15	g6	h6	i6							d4	e4	f4
	4월	a5 b	5	c5	d5							k5	15	g6	h6	i6	j6							e4	f4
	5월	a5 b	5	c5	d5	65							15	g6	h6	i6	j6	k6							f4
2214	6월	a5 b	5	c5	d5	e5	f5/							g6	h6	i6	j6	k6	16						
23년	7월	b	5	c5	d5	e5	f5	g5							h6	i6	j6	k6	16	a6					
	8월			c5	d5	e5	f5	g5	h5							i6	j6	k6	16	a6	b6				
	9월				d5	e5	f5	g5	h5	i5							j6	k6	16	a6	b6	c6			
	10월					e5	f5	g5	h5	i5	j5/							k6	16	a6	b6	c6	d6		
	11월						f5	g5	h5	i5	j5	k5							16	a6	b6	c6	d6	e6	
	12월							g5	h5	i5	j5	k5	15							a6	b6	c6	d6	e6	f6
	1월	a7							h5	i5	j5	k5	15	g6							b6	с6	d6	е6	f6
	2월	a7/ 1	7							i5	j5	k5	15	g6	h6							c6	d6	e6	f6
	3월	a7/b	o7	c7							j5	k5	15	g6	h6	i6							d6	e6	f6
	4월	a7/ b	7	с7	d7							k5	15	g6	h6	i6	j6							e6	f6
	5월	a7/ b	7	с7	d7	e7							15	g6	h6	i6	j6	k6							f6
24년	6월	a7/ b	7	с7	d7	e7	f7							g6	h6	i6	j6	k6	16						
24 단	7월	b	7	с7	d7	e7	f7	97							h6	i6	j6	k6	16	a6					
	8월			с7	d7	e7	f7	g7	h7							i6	j6	k6	16	a6	ь6				
	9월				d7	e7	f7	g7	h7	17							j6	k6	16	a6	b6	06			
	10월					e7	f7	g7	h7	i7	j7							k6	16	a6	b6	c6	d6		
	11월						f7	g7	h7	i7	j7	k7							16	a6	b6	c6	d6	e6	
	12월							g7	h7	i7	j7	k7	17							a6	b6	c6	d6	e6	f6
	1월	a7							h7	i7	j7	k7	17	g8							b6	с6	d6	e6	f6
	2월	a7/ k	57/		,					i7	j7	k7	17	g8	222							c6	d6	e6	f6
	3월	a7/ b	5 7	¢7		,					j7	k7	17	g8	h8	18		,					d6	e6	f6
	4월	a7/ b					,					k7	17	g8	h8	i8	j8							e6	f6
	5월	a7/ b	7	с7	d7	e7							17	g8	h8	i8	ј8	k8							f6
25년	6월	a7/ b					///							g8	h8	i8	ј8	k8	18		,				
23 [.	7월	b	7	с7	d7	e7	f7	g7/							h8	i8	ј8	k8	18	a8					
	8월			с7	d7	e7	f7	g7	h7							i8	ј8	k8	18	a8	68		1		
	9월				d7	e7	f7	g7	h7	j7							ј8	k8	18	a8	b8	¢8		,	
	10월					e7	f7	g7	h7	i7	j7/							k8	18	a8		с8	11		
	11월						f7	g7	h7	i7	j7	k7							18	a8	b8	с8	d8	e8	
	12월							g7	h7	i7	j7	k7	17 /							a8	b8	с8	d8	e8	f8

^{*} 패널 $i=1,3,5,\cdots$ \bigcirc 신규 진입 표본 \bigcirc 6개월 휴식 후 재진입 표본

④ 표본 규모

- ㅇ 표본 배분
 - 전체 900개 조사구를 시도별로 제곱근 비례배분한 다음, 시도 내에서 동부·읍면부별로 비례배분 실시
 - 연동모형을 고려하여 패널별 표본규모를 6의 배수로 조정
- 표본규모 산정
 - 전국 표본규모의 총합은 900조사구(1,800구역)이며, 월 조사대상가구는 7,200가구임
- 표본 가구 수 결정
 - 표본체계(6-6-6 연동)와 응답비율(적격률, 응답률), 표본관리의 효율성과 유효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과대 표집 적용
 -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8가구를 조사구역(원표본)으로 설정한 후, 설계층별 예비 가구 수(6~12가구) 안에서 무응답 가구 대체* 허용
 - * 가구주 직업(취업/무직) 및 가구원 수(1인/2인/3인 이상)가 일치하는 가구로만 대체 허용

5 표본 추출

- 표본추출 방법: 층화 2단 집락추출
- ㅇ 표본조사구
 - Cube method를 이용한 균형표본추출(Balanced sampling) 및 분할
 - 27개 설계층 및 소득 관련 균형변수를 기준으로 패널별 표본조사구 추출
 - 추출된 표본조사구가 상호 동질성을 가지도록 6개 그룹으로 분할
- ㅇ 표본가구
 - 조사구별 **단순임의추출**한 시작가구로부터 빈집 등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연속된 8가구를 조사구역(4가구씩 2개 구역)으로 설정
 - 구역 확정 당시 적격가구가 본조사에서 부적격으로 전환되거나 무응답인 경우, 설정된 예비표본 내에서 가구대체 실시

6 가중값

① 설계가중값

설계층별 조사구추출률 및 가구추출률의 역수로 구한 기초가중값에
 조사구별 예비표본조사비율의 역수를 곱해 산출

설계가중값 $w_{hij}^b = \frac{M_h}{n_h M_{hi}} imes \frac{M_{hi}}{m_{hi}} imes \frac{m_{hi}}{m_{hi}^s} = \frac{M_h}{n_h m_{hi}} imes \frac{m_{hi}}{m_{hi}^s}$

 M_h : h층의 인총 전수 조사구의 가구 수

 M_{hi} : h층 i조사구의 전체 가구 수

 n_h : h층의 표본 조사구 수

 m_{hi} : h층 i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 (예비표본 포함한 최대표본규모)

 m_{hi}^s : h층 i조사구 내 조사 가구 수(원표본+예비표본 중 조사한 가구 수)

② 무응답가중값

응답 성향을 고려하여 설정한 무응답층별로 응답률을 추정한 후, 해당
 값의 역수를 설계가중값에 곱해 산출

무응답가중값 $(g 무응답층 \ h \Leftrightarrow \ i 조사구 \ j 가구) \qquad w_{g, \, hij}^{\, r} = w_{hij}^b \times \frac{\sum_{\, \in \, (s \cap g)} w_{hij}^b}{\sum_{\, \in \, (r \cap g)} w_{hij}^b}$

 $w_{hij}^{\,b}$: h층 i조사구 j가구의 설계가중값

 s
 : 전체 표본

 r
 : 응답 표본

③ 사후조정가중값

(t 번 째)

ㅇ 보조변수 주변합에 대한 추정값을 반복비례가중법으로 모수에 수렴시켜 산출

m월 사후가중값 $w_{m,hij} = w_{hij}^T$ (h 사후층 i 조사구 j가구)

 w_i^F : 표본 i의 최종 가중값

: 표본 i의 T번째 반복비례 가중값(제약식과 수렴 조건 충족)

 $N_{a..} = \hat{N}_{a..} \left(= \sum_{h=1}^{56} \sum_{c=1}^{10} \hat{N}_{abc} = \sum_{e (r \cap a)} w_{hij} \right)$

 $N_{.b.} = \hat{N}_{.b.} \left(= \sum_{c=1}^{68} \sum_{c=1}^{10} \hat{N}_{abc} = \sum_{c \in (r \cap b)} w_{hij} \right)$ 제약식

 $N_{..c} = \hat{N}_{..c} \left(= \sum_{i=1}^{68} \sum_{j=1}^{56} \hat{N}_{abc} \equiv \sum_{i \in (r \cap c)} w_{hij} \right)$

: 벤치마크 차원(변수), $a=1, \dots, 68, b=1, \dots, 56, c=1, \dots, 10$ a, b, c

 N_{abc} : 벤치마크 그룹 $(a,\;b,\;c)$ 모집단 가구수

 \hat{N}_{abc} : 벤치마크 그룹 $(a,\ b,\ c)$ 모집단 가구수에 대한 추정값

: 응답 표본

 w_{hij} : h층 i조사구 j가구의 가중값

 $\sum_{i=1}^{68} \left| \left| \hat{N}_{a..}^{(t)} - N_{a..} \right| + \sum_{b=1}^{56} \left| \left| \hat{N}_{.b.}^{(t)} - N_{.b.} \right| + \sum_{c=1}^{10} \left| \left| \hat{N}_{..c}^{(t)} - N_{..c} \right| \right| < arepsilon$ 수렴조건

※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형

: 그룹(a, b, c)의 모집단 가구수에 대한 t번째 추정값

: 임계값(= 0.000001)

 $w_{hij}^{(t,\,1)} = \begin{cases} w_{hij}^{\,(0)} \times \frac{N_{a..}}{\sum_{\in\,(r\,\cap\,a)} w_{hij}^{\,(0)}} \ , & for \ t = 1 \\ w_{hij}^{\,(t\,-\,1,\,3)} \times \frac{N_{a..}}{\sum_{\in\,(r\,\cap\,a)} w_{hij}^{\,(t\,-\,1,\,3)}} \ , & for \ t \geq 2 \end{cases}$

반복비례가중값

 $w_{hij}^{(t,\,2)} = w_{hij}^{(t,\,1)} \times \frac{N_{.b.}}{\sum_{\in (r \cap h)} w_{hij}^{(t,\,1)}}$

 $w_{hij}^{(t,3)} = w_{hij}^{(t,2)} \times \frac{N_{..c}}{\sum_{e (r,0,c)} w_{hii}^{(t,2)}}$

: h층 i조사구 j가구의 무응답 가중값

: t번째 반복에서 n번째 차원의 벤치마크 가중값

④ 분기가중값

o (월별 사후가중값 합÷3)을 반복비례가중법으로 보정

q분기 가중값 $\left(h$ 층 i조사구 j가구) $w_{q,hij}^{F}=w_{q,hij}^{T}$

 $w_{q,hij}$: 초기가중값(= $\frac{1}{3}\sum_{m=q\times 3-2}^{q\times 3}w_{m,hij}$)

 $w_{q,hij}^{\,\,T}$: 제약식과 수렴조건을 만족하는 T번째 반복비례가중값

7 추정

○ (평균) 호르비츠-톰슨(Horvitz-Thompson, HT) 추정량

평균 추정량 $\hat{\mu} = \overline{y} = \frac{\sum\limits_{h}^{H}\sum\limits_{i}^{n_h}\sum\limits_{j}^{m_{hi}}w_{hij}\;y_{hij}}{\sum\limits_{h}^{H}\sum\limits_{i}^{n_h}\sum\limits_{i}^{m_{hi}}w_{hij}}$

 w_{hij} : h층 i조사구 j가구의 최종 가중값(분기/연간)

· y_{hij} : h층 i조사구 j가구의 관측값(소득/지출)

ㅇ (분산) 테일러(Taylor) 선형근사 추정량

 $\widehat{Var}(\overline{y}) = \sum_{h=1}^{H} \frac{n_h (1 - f_h)}{n_h - 1} \sum_{i=1}^{n_h} (e_{hi} - \overline{e}_{h..})^2$ $\cdot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overline{y})\right) / w...$ $\cdot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right) / n_h$ $\cdot w... = \sum_{h}^{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표준오차 : $\widehat{SE}(\overline{y}) = \sqrt{\widehat{Var}(\overline{y})}$, 상대표준오차 : $\widehat{RSE}(\overline{y}) = \frac{\widehat{SE}(\overline{y})}{\overline{y}} \times 100(\%)$

IV

조사항목

① 가구 실태 개요

① 가구원 항목

I. 가구주에 관한 사항	Ⅰ. 가구주에 관한 사항 Ⅱ. 배우:	자에 관한 사항
성별 1.남 2여 연령만 세	성별 1.남2.여 연령 만 세 성별 1.	남2.여 연령 만 세
교 육 정 도 ※ 조어	교 육 정 도 ※ 교육정	도 ※
· 학교 _ 학년 재학 · 무학 중퇴	·학교계열 졸업 ·학교 재학 중퇴 휴학	교계열 졸업 재학 중퇴 휴학
산 업 ※	중퇴 ************************************	중퇴 호하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무학 · 무학	
직 업 ※ · 근무처에서 하는 일 · 종사상의 지위	산 업 ※ 산 약 · 사업체명 · 사업체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사업체	명 명 의 주된 활동
Ⅲ. 연령 및 성별 가구원수	직 업 ※ 직 업 ・근무처에서 하는 일 ・근무처 ・근무처에서의 지위 ・근무처	* 에서 하는 일 에서의 지위
연 령 남 여 2세이하	Ⅲ. 기타 가구원 사항	
3 ~ 5세	구분 가구주와 성 연 취학및 관 계 별 령 취업상태 비	고(부호)
6 ~ 13세	1 ※ パイティ	와 관계
14 ~ 19세 20 ~ 29세	2 3. 미혼 5. 부모	자녀 4. 미혼형제,자매 (장인,장모) 6. 조부모
20 ~ 29세 30 ~ 39세	3 7. 기타 생성 병	사이 4. 이논왕세,사비 (장인,장모) 6. 조부모 친인척 8. 동거인 : 1. 남자 2. 여자 ! 취업상태 · 2. 유치(아)원3. 초등 고교 5. 재수생 6. 대학(교) 원 8. 취업 9. 기타
40 ~ 49세	4 ※ 취학 및	. 1. a^ 2 ~ ~ ~ ~ ~ ~ ~ ~ ~ ~ ~ ~ ~ ~ ~ ~ ~ ~
50 ~ 59세	5 1. 유아 4 중·	· 2 유치(아)원3. 초등 고교 5 재수생 6 대학(교)
60세이상	6 7. 대학	원 8. 취업 9. 기타

⇒ (2009 ~)

			Ι.	. 가	구		원 시	· 항				
(1)가구주와의	(2)	(3)	(4) 교육	· 정도	(5)		(6) 산	- 업		(7) 직	임업	(8) 종사
(1)가구주와의 관 계	(2) 성별	(3) 연령	학력	수학 여부	(5) 취업 여부	코드	사업체명	주된 활동	코드	일의 종류	직명 (직위)	(8) 종사 상지 위
1												
가구주와의 관계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5.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6.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7. 조부모 8. 가구주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9. 기타												
종사상 지위 1. 상용근로		시근토	드 3. 일용	}근로 4	. 고용	}주	5. 자영자	6. 무급가족	수종사	자 7.	기타	

② 가구주와의 관계

○ ~1997년 : 코드화된 자료 미존재

○ 1998년~: 가구원별 가구주와의 관계 2~9번 생성

○ 2009년~: 1998년 시계열까지 소급하여 가구주 관계 1~9번 생성(1998년~)

2 기혼자녀 3 미혼자녀 4 미혼형제, 자매 5 부모(장인, 장모) 6 조부모 7 기타친인척 8 동거인		1998년~	
4 미혼형제, 자매 5 부모(장인, 장모) 6 조부모 7 기타친인척	2	기혼자녀	
5 부모(장인, 장모) 6 조부모 7 기타친인척	3	미혼자녀	
6 조부모 7 기타친인척	4	미혼형제, 자매	
7 기타친인척	5	부모(장인, 장모)	_
,,,,,,,,,,,,,,,,,,,,,,,,,,,,,,,,,,,,,,,	6	조부모	'
8 동거인	7	기타친인척	
0 0 / 1 E	8	동거인	
9 손자녀	9	손자녀	

	2009년 이후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5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6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7	가구주나 배우자의 조부모
8	가구주나 배우자의 미혼형제, 자매
9	기타

② 가구실태 항목 변경 내역

① 가구주에 관한 사항

· 성 별(1963~) : 남(1), 여(2)

· 연 령(1963~) : 만연령

② 배우자에 관한 사항(1998~)

• 성 별 • 연 령 • 교육정도 • 산 업 • 직 업

③ 기타 가구원 사항(1998~)

• 1997년 이전 : 가구원은 성별/연령대 수준의 정보 수집

・ 1998~2008년 : 가구원 가구주와 관계/성별/연령/취업여부

• 2009년 ~ : 가구주와 동일 수준정보 + 가구원 종사상 지위

④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관한 사항(1998~)

• 취업, 학업, 기타로 구분 파악

⑤ 가구 구분(1963~)

·1990년~1998년 : 봉급자가구, 노무자가구, 근로자외 가구, 무직가구

·1999년~2008년 : 사무직가구, 생산직가구, 근로자외 가구, 무직가구

· 2009년~ : 근로자 가구(사무직가구, 생산직가구), 근로자외 가구(자영자가구, 무직가구)를 별도 조사하지 않고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와 직업 분류를 조합하여 생산

⑥ 종사상지위

· 1990년 ~ 2008년 과거계열의 기구주 종사상지위를 추정하여 1~9번 종사상지위 생성

	1990~1997
코드	내용
111	공무원
112	사무종사자
121	기능, 상용노무자
122	임시, 일용노무자
210	상인(자영업주)
220	개인경영자
230	법인경영자
240	자유업자
291	무직
292*	기타

^{*} 기타(292) : 국회의원, 기수, 관상가, 점쟁이 등

 \Rightarrow

	1998~2008
코드	내용
111	공무원
112	사무종사자
121	기능, 상용노무자
122	임시, 일용노무자
211	상인(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212	상인(피용자가 있는 고용주)
220	개인경영자
230	법인경영자
241	자유업자(피용자 없음)
242	자유업자(피용자 있음)
291	무직

	1990~2008
코드	내용
1	공무원
2	사무종사자(임시 및 일용 포함)
3	기능, 상용근로자
4	생산(임시 및 일용)
5	자영업주
6	개인경영자
7	법인경영자
8	자유업자
9	무직

· 2009년~ : 1~7번 종사상지위 생성

코드	내용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 종사자
7	기타

⑦ 배우자 유무(1998~)

· 있음_동거(1) · 있음_비동거(2) · 없음(3)

⑧ 가구유형

· 2009년 이전에는 우선순위(맞벌이>노인>모자)를 주어 가구 유형을 하나로 표시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개별적으로 표시

< 가 구 유 형 >

유 형	개 념
	· 2002년 이전 : 18세이상 60세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0세이상 노인인 가구
	• 2003년~ : 18세이상 65세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구원 중
노인가구	1인 이상이 65세이상 노인인 가구
	* 2003년 이후 60세→65세로 변경됨
	* 65 가 1 18 64 가
	가
모자가구	가구주가 여성이고, 가구원이 18세미만의 미혼자녀만 있는 경우
テンレント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됨
	가구주가 직업이 있고, 동거하는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맞벌이가구	맞벌이로 인정
	* 부부가 따로 사는 경우,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맞벌이에서 제외
일반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 가구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⑨ 가구원수(1963~)

·조사대상월의 1/2 이상 거주 여부	~2008
Ŷ	
조사대상월 15일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인정(가구원 수 포함) >	
·예비군 훈련중인 가구원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	2009~
・3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생 및 취업연수생	
· 당월 출생 신생아(기간불문)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1개월 미만 부재 가구원	

*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상관 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포함

⑩ 취업인원수(1963~)

· 취업자 개념: 만 15세 이상 가구원만 응답

-취업(1): 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비취업(2):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비취업자 개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에 따름

----- < 가계동향조사에서 취업자 기준> -

- ①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급료로 받는 경우
- ② 자기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 ③ 소득의 적자유무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④ 휴가나 유급휴직의 경우
- ⑤ 무급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⑥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경우

①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ㅇ 연도별 산업 및 직업분류 적용

산업분	류	직업분류		
개 정	적 용	개 정	적 용	
제5차 개정(1984.1.)	1985. 1	제3차 개정(1974.11.)	1976. 1	
제6차 개정(1991.9.)	1992. 4	제4차 개정(1992.12.)	1994. 1	
제7차 개정(1998.1.)	1999. 1	제5차 개정(2000.1.)	2001. 1	
제8차 개정(2000.1.)	2001. 1	제6차 개정(2007.7.)	2008. 1	
제9차 개정(2007.12.)	2008. 1	제7차 개정(2017.7.)	2018. 1	
제10차 개정(2017.1)	2017. 7			

○ 산 업**(**1975~)

• 1990년 ~ 1992년 1/4분기 : 제5차 개정 산업분류 적용

· 1992년 2/4분기 ~ 2000년 : 제6차 개정 산업분류 적용

(제7차 산업분류는 유사:1998~2000)

· 2001년 ~ 2004년: 제8차 개정 산업분류 적용

· 2005년 ~ 2018년: 제9차 개정 산업분류 적용

• 2019년 ~ : 제10차 개정 산업분류 적용

1990~1992 1/4분기 적용

	1770 1772 1/41/1 7 7 8
	산업분류(산업 제5차 분류)
2	광 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수도사업
5	건설업
6	도·소매, 음식숙박업
7	운수창고 및 통신업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9	사회 및 개인 서비스
0	무직 및 분류불능직

1992 2/4분기 ~ 2000 적용

	1992 2/4분기 ~ 2000 석용
	산업분류(산업 제6차 분류)
A	농업, 수렵 및 임업
В	어 업
C	광 업
D	제조업
E	전기, 가스 수도사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Н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창고 및 통신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험행정
M	교 육
N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О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P	가사 서비스업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R	무직 및 분류불능직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001~2004 적용			2005~2018 적용		2019~ 적용
	산업분류(산업 제8차 분류)		산업분류(산업 제9차 분류)		산업분류(산업 제10차 분류)
A	·농업,수렵 및 임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В	어업	В	광업	В	광업
C	광업	С	제조업	С	제조업
D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Е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Е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F	건설업	F	건설업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G	도매 및 소매업	G	도매 및 소매업
Н	숙박 및 음식점업	Н	운수업	Н	운수 및 창고업
I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K	금융 및 보험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부동산업
M	사업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О	교육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험 행정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험 행정
P	보건 및 사회복지	Р	교육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R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Т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무직 및 분류불능직	U	국제 및 외국기관	U	국제 및 외국기관
		Z	기타. 무직 및 분류 불능직	Z	기타. 무직

· 직 업(1975~)

2003~2004 적용

	2003~2004 석용
코드	제5차 직업분류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직업군인
Z	기타(무직 및 분류불능)

2005~2018	적용
-----------	----

코드	제6차 직업분류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Α	직업군인
Z	기타. 무직

2019~ 적용

	2017 0
코드	제7차 직업분류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A	직업군인
Z	기타. 무직

⑩ 교육 정도에 관한 사항

○ 교육정도(1985~)

코드	교육기관 종류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초급대학
5	대학교
6	대학원

코드	졸업 여부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1998~)

○ 교육정도**(2019~**)*

	•		
코드	교육기관 종류		
1	안받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3년제 이하)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졸업 여부

③ 사용면적(전용)(1998~)

· 주거부문에 사용되는 면적을 2007년 이전에는 「평」으로 조사했던 사항을 3.3을 곱하여 m²로 통일(2007. 6월이전: 평, 2007. 7월이후: m²)

코드

⑭ 자동차보유(1998~)

· 자동차 유무에 따라 지출 품목 차이가 커서 내검항목으로 활용 하기 위해 조사 실시

¹ 졸업 2 재학 3 수료 4 중퇴 5 휴학

^{*} 통합 가계동향조사 기준

⑤ 거처구분(1998~)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아파트
- 연립 및 다세대(빌라, 맨션)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 · 오피스텔, 기타(2019~)

⑩ 세대구분(1998~)

연 도	변 경 내 용
1998년	- 1. 1세대 2. 2세대(핵가족) 3. 2세대(기타) 4. 3세대 5. 4세대
2003년	- 1. 1세대 2. 2세대 3. 3세대 4. 4세대
2009년~	- 1. 1세대 2. 2세대 3. 3세대 이상

① 주거에 관한 사항

○ 점유 형태(1963~)

연 도	변 경 내 용
~2008	1. 자가 2. 무상주택 3. 사택 4. 전세 5. 보증부월세 6. 사글세 7.월세
2009~2019 ^a	1. 자기집 2. 무상주택 3. 사택 4. 전세 5. 영구임대 6. (보증부)월세
7/1114°~	1. 자기집 2. 무상주택 3. 사택 4. 전세 5. 영구임대 6. (보증부)월세 7. 보증금 없는 월세

^{* 2019&}lt;sup>a</sup>: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2019^b: 가계동향조사

○ 평가액(1963~)

연 도	변 경 내 용
~')()()()	주거와 생활여건 및 노후 정도와 유사한 주택을 월세로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하는 총금액 - 매월 지불하는 월세
2000~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와 생활여건 및 노후 정도와 유사한 주택을 월세로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하는 총금액

○ 점유율(1998~)

- · 자가가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비율
- 주택소유 여부(1998~)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가구원 명의 소유 주택이 있는지 여부 조사
 - · 현재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경우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타 지역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있음>에 해당

③ 가계수지 주요 항목 변경 내역[2017년 이후]

□ 소득 항목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재산소득의 하위 항목 중 개인연금소득과 퇴직연금소득 항목은 가계 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개인(퇴직)연금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재분리
- 사적이전소득: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 이전소득의 하위 항목 중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항목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사적이전소득 항목으로 통합하 였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재분리
- 퇴직수당 및 기타비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하위 항목 중 퇴직수당, 기타비경상소득 항목은 가계 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기타비경상소득 항목으로 통합였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재분리

구분	변경 전(2016년 이전)	변경 후(2017~2019)	통합(2019~)
	개인연금소득	케이(티지)여그 사도	개인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개인(퇴직)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소득 항목	가구간이전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사적이전소득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기타이전소득
	퇴직수당	기타비경상소득	퇴직수당
	기타비경상소득	/ 나비/ð/ð 소득 	기타비경상소득

□ 소비지출 항목

- 화물운송 및 보관 항목에서 일반화물과 이사화물 분리
 - 20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중 화물운송 및 보관 항목을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개편 시일반화물과 이사화물 항목으로 분리
- 0 기타 숙박시설을 기타숙박시설과 기타주거시설로 분리
 - 20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중 기타숙박시설을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기타숙박시설과 기타주거시설 항목으로 분리
- 생명보험(보장성 보험)을 종신보험과 건강관련보험으로 분리
 - 20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중 생명보험을 2017~2018년 가계 동향조사(지출부문)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보장성보험과 건강관련 보험 항목으로 분리
- 일반수수료를 일반수수료와 법무행정수수료로 분리
 - 20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중 일반수수료 항목을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일반수수료와 법무행정 수수료 항목으로 분리

□ 비소비지출 항목

- 비경상조세: 비경상소득세, 비경상재산세, 부동산취득 관련세, 과징금, 기타비경상조세
 - 비경상조세의 하위 항목인 비경상소득세, 비경상재산세, 부동산취득 관련세, 과징금, 기타비경상조세는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비경상 조세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재분리

- 이자비용: 주택담보대출이자, 기타이자
 - 이자비용의 하위 항목인 주택담보대출이자, 기타이자는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에서 이자비용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재분리
- 가구간이전지출: 교제비, 경조비, 국내학생가구송금,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기타송금(국내), 기타송금(국외)
 - 비소비지출의 하위 항목 중 교제비, 경조비, 국내학생기구송급, 국외학생 및 환지에 대한 송급, 기타송급(국내), 기타송급(국외)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가구간 이전지출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재분리
-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단체회비,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 비영리단체로 이전의 세부 항목인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단체회비, 시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비영리단체로 이전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나,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 시 재분리

 구분	변경 전(2016년 이전)	변경 후(2017~2019)	통합(2019~)
비소비 지출 항목	비경상소득세 비경상재산세 부동산취득 관련세 과징금 기타비경상조세 주택담보대출이자	비경상조세 이자비용	비경상소득세 비경상재산세 부동산취득 관련세 과징금 기타비경상조세 주택담보대출이자
	기타이자 교제비 경조비 국내학생가구송금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기타송금(국내)	가구간이전지출	기타이자 교제비 경조비 국내학생가구송금 국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기타송금(국내)
	기타송금(국외) 종교기부금 회비및기타기부금 단체회비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송금(국외) 종교기부금 회비및기타기부금 단체회비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④ 소득 및 가계지출 조사 항목

구분			분류 항목		
	경상소득(23)	근로소득(6)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급여소득 및 상여금		
소득(26)		사업소득(4)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		
		재산소득(5)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8)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사회적 현물이전, 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3)		경조소득, 퇴직수당, 기타비경상소득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18)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등		
		주류 및 담배(7)	주류, 담배 등		
		의류 및 신발(20)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등		
	소비지출(357)	주거 및 수도광열(16)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등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49)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등		
가계지출 (282)		보건(13)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등		
(382)		교통(24)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등		
		통신(7)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등		
		오락·문화(41)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등		
		교육(23)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등		
		음식·숙박(6)	식사비, 숙박비 등		
		기타 상품 및 서비스(33)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등		
	비소비지출(25)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 및 부담금,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5 연도별 조사 항목 수(2017년 이후)

조사 기준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가계동향조사
기간		2017~2019	2017~2018	2019~
전체항목		36	397	408
소득		22	-	26
	경상소득	20	-	23
	근로소득	6	-	6
	사업소득	3	-	4
	재산소득	5	-	5
	이전소득	6	-	8
	비경상소득	2	-	3
가계지를		-	386	382
	소비지출	-	357	357
	식료품・비주류음료	-	118	118
	주류 • 담배	-	7	7
	의류·신발	-	20	20
	주거・수도・광열	-	16	1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49	49
	보건	-	13	13
	교통	-	24	24
	통신	-	7	7
	오락·문화	-	41	41
	교육	-	23	23
	음식·숙박	-	6	6
	기타상품・서비스	-	33	33
	비소비지출	14	2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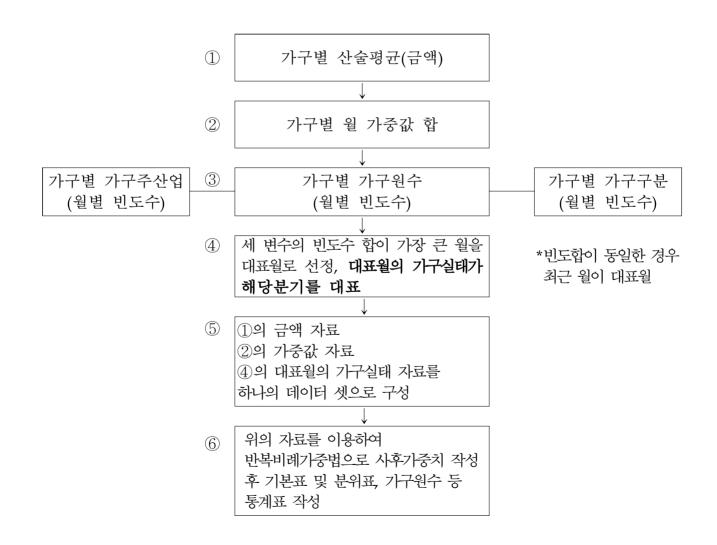
^{* (}세분류) 항목 수 기준

V

가계동향조사 분기통계 작성 방법

□ 가구실태추정 및 MD 작성방법(월->분기->연간)

- 분기통계 작성 방법: 가구별로 월별 자료를 연계하여 분기 자료 추정
 * 가구 소득 및 지출의 분기 금액은 월 자료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며,
 분기 가구실태는 가구별 분기 대표월을 선정하여 대표월의 가구실태로 작성함
- 1 가구별로 분기 평균 소득 및 지출 산출(월 자료의 산술평균)
- ❷ 응답횟수를 고려한 가구별 분기 가중값(=월별 가중값의 합) 산출
- 3 가구별 분기 대표 가구실태(가구원수, 산업, 직업 등) 추출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 시 유의사항

□ MD 제공 범위

VI

- (1990~2016) 소득과 지출 부문을 동일 표본에서 동시 파악했으며, 분기와 연간 단위 MD 제공
 - 1990~2002년 도시 2인이상, 2003년~2005년 전국 2인이상, 2006년이후 전국 1인이상으로 MD제공
- (2017~2019) 분기 소득조사와 연간 지출조사로 구분하여 표본, 조사기간 등 조사체계를 달리하여 각각 조사
 - (2017~2019, 소득부문) 분기 소득부문 MD 제공
 - (2017~2018, 지출부문) 연간 지출부문 MD 제공
- (2019~) 통합 가계동향조사로 개편을 통해 소득과 지출을 동시 파악. 단, 소득부문*은 분기 단위로, 지출부문은 분기 및 연간 단위로 자료 제공
 - (2019 ~, 분기) 분기 소득·지출부문 MD 제공
 - (2019 ~, 연간) 연간 지출부문 MD 제공
 - * 소득(시업소득 등)은 계절성의 영향은 크게 받으며, 6-6-6 표본체계에서는 표본가구의 1년 중 최대 응답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연간 소득 추정에 한계가 있어 연간소득 미제공 (가구특성변수(소득구간, 소득분위 등) 변환 제공). 반면 지출부문은 소득부문에 비해 항목의 계절성이 크지 않아 연간 지출 추정 가능

□ 지출 부문 MD 이용 시 유의 사항

- (포괄범위) 2016년이전 지출부문(비농림어가)은 분기 및 연간 단위로, 2017~2018년 지출부문(농림어가포함)은 연간 단위로, 2019년 개편 이후 지출부문(농림어가포함)은 분기 및 연간 단위로 제공
- (조사방법 변경) 2016년 이전 지출부문은 가계부 기입방법(36개월조사)
 2017~2018년 지출부문은 가계부 기입(1개월)과 면접조사(지난 1년간 지출)
 방식 병행, 2019년 개편 이후 지출부문(6-6-6)은 가계부 기입방식으로 변경

* 개편 전후 시계열 비교 시 포괄범위 및 조사 방법 변경으로 인해 지출 금액 자체의 증감 비교 등은 분석 시 유의 필요

□ 통합 가계동향조사 MD 제공 범위(2019~)

- (농림어가 포함여부에 따른 구분) 2019년이후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농림 어가를 포함하여 조사되어, 농림어가 포함한 전체가구와 비농림어가 자료로 구분하여 각각 MD 제공
 - (가중값) 전체가구, 비농림어가 가중값이 각각 부여되어 있어 자료 분석 시 유의 필요
 - (농림어가 구분 코드) 통합 가계동향조사는 농림어가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농림어가를 별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은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관련 코드 또한 미제공
- (소득부문과 지출부문)
 - (소득부문) 분기 MD만 존재 (1인이상 비농림어가, 1인이상 전체가구 (농림어가포함) 2set 제공)
 - (지출부문) 분기 및 연간 MD 모두 존재 (각각 1인이상 비농림어가, 1인이상 전체가구(농림어가포함) 4set 제공)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작성 방법

- (정렬 방법) 소득과 가구키*(소득이 동일한 가구에 정렬 순서 적용)로 정렬
- (가중치 적용) 정렬된 가구의 가중치를 순차적으로 합산

- (소득 5분위 구분) 전체 가중치의 합에서 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1분위, 20%~40%가 2분위, 40%~60%가 3분위, 60%~80%가 4분위, 80%~100%가 5분위에 해당
- (집계) 소득 5분위 구분변수*를 이용 집계
 - * 소득 5분위 구분변수는 1인이상(전체, 비농림어가 구분) MD에 대해 각각 제공 단, 2인이상 소득 5분위 구분변수는 미제공(별도 작성필요)
- 근로자가구/근로자외가구의 소득 5분위 통계표는 각각의 해당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 5분위를 재산정한 결과임
 - 예)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 ① 전체가구 중 근로자가구만을 대상
 - ②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오름치순으로 정리하여 이들의 순서에 따라 20%씩 묶어 각 분위별로 집계

□ 기타 유의사항

- 중앙값 등 통계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통계 패키지(SAS, Minitab 등)마다 서로 상이한 값 도출 가능
 - 예) 중앙값을 계산하는 방법(Jone Tukey, M&M, M&S, Freud&Peries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여 통계 패키지마다 중앙값을 계산하는 방법이다를 수 있음.
 - 이에,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 지출의 중앙값을 산출하면 통계 패키지마다 서로 상이한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 발생
- 소득·지출 등 가계수지 항목이 아닌, 내용검토를 위해 조사한 일부 항목*은 이용자의 오용 가능성 방지를 위해 추후 수정될 수 있음
 - * 거처구분, 월세평가액, 전세보증금 등 연동표본체계(6-6-6)로 인해 조사 초기 정확한 응답에 한계가 있는 일부 항목

VII

마이크로데이터(MD) 이용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유형

-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 (MDIS) 홈페이지(http://mdis.kostat.go.kr)를 통해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함
 - 공공용: MDIS 홈페이지에서 직접 추출·다운로드 하여 분석·가공 가능
 - ② RAS(원격접근서비스): MDIS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원격서버에서 연구·분석 후 결과 다운로드 및 활용
 - ③ RDC(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MDIS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용센터 PC에서 연구·분석 후 결과 활용

<참고> 가계동향조사 MD자료 데이터 유형

	기계여 베이	서비스 유형별 제공 데이터 범위		
데이터 구분	시계열 범위	공공용	RAS	RDC
● 가계동향조사 (신분류, ~16, 소득부문 '17~'19)	1990~2019년	분기/연간	분기/ 연간 ¹⁾	분기/월/연간 ²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2017~2018년	연간	연간	연간
3 가계동향조사(2019년~)	2019년~	분기/연간 ³⁾	분기/연간 ³⁾	분기/월/연간 ³⁾

주: 1) 1990~2016 연간 자료

- 2) 2017~2019 연간 자료(소득부문)
- 3) 소득 자료는 연간 단위 미작성

②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방법

- · 공공용 : (MDIS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에서 회원가입 → 자료이용
 - \rightarrow 다운로드 서비스 \rightarrow 소득 소비·지산 \rightarrow 가계동향조사 \rightarrow 연도선택
- · RAS : (MDIS 홈페이지)https://mdis.kostat.go.kr에서 회원가입 → 자료이용
 - ightarrow 인가용서비스 ightarrow 원격접근서비스(RAS) ightarrow 신청하기
- · RDC: (MDIS 홈페이지)https://mdis.kostat.go.kr에서 회원가입 → 자료이용
 - ightarrow 인가용서비스 ightarrow 이용센터서비스신청(RDC) ightarrow 신청하기

□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방법

- ①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MDIS) 홈페이지 접속 http://mdis.kostat.go.kr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자료이용> → <다운로드 서비스> → <소득소비·자산> → <가계동향조사> → 연도선택 후 항목 조회
- ④ 분석대상 자료 선택 후 분석대상 메타자료 확인 가능
- ⑤ 항목선택 및 추가 → 다운로드(설계서 및 추출결과)

□ RAS(원격접근서비스) 및 RDC(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자료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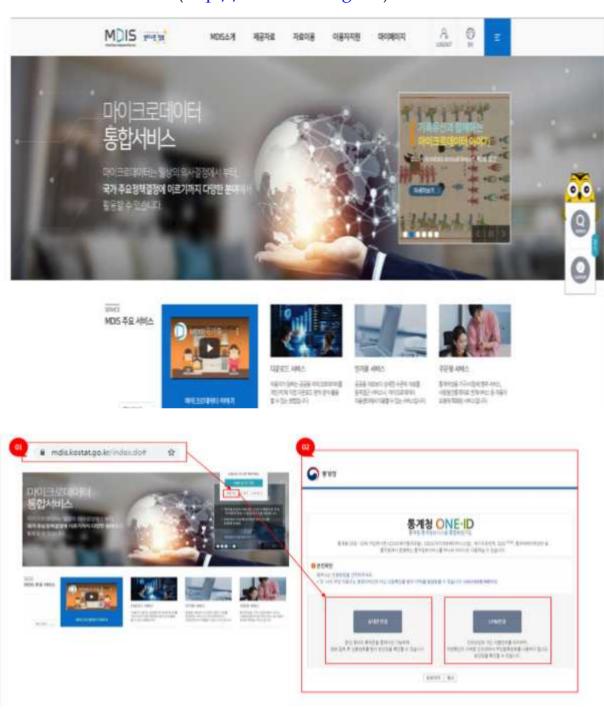
- (제공 범위) RAS 및 RDC를 통해서는 공공용 제공 데이터보다 상세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절차) 상세 데이터의 분석에 따른 결과 해석의 오용 방지 등을 위해 가계수지동향과 승인 필요

이용자신청 ⇒마이크로데이터과 ⇒ 가계수지동향과 ⇒ 마이크로데이터과 MDIS 홈페이지 • 이용자 신청 사항에 대해 • 해당 신청에 대해 RAS • 가계수지동향과 결정에 따라 에서 이용계획서 가계수지동향과에 승인 및 RDC 이용 가능 여부 해당 데이터를 이용자가 사용 결정/마이크로데이터과에 보안서약서 등 여부 요청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작성 결과 내용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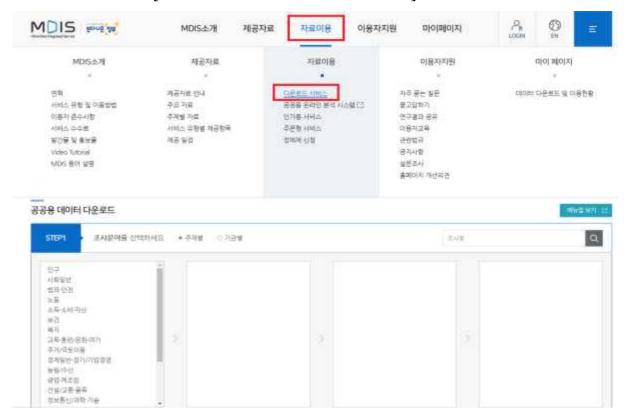
* 기타 이용 방법 및 프로그램 설치 등 문의는 마이크로데이터과에 연락 필요

예시) 가계동향조사 2019년 지출 자료의 평균 취업인원수, 가구주 연령 추출

① MDIS 홈페이지(http://mdis.kostat.go.kr) 접속 및 회원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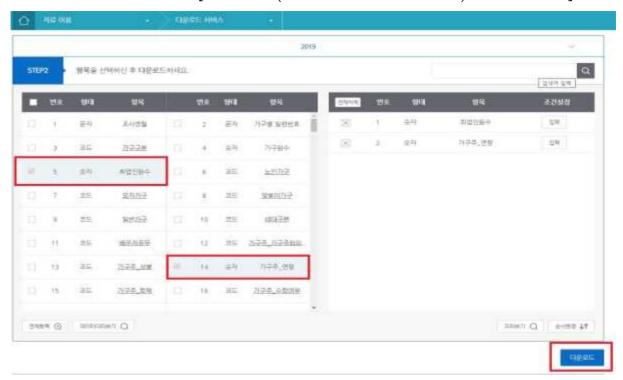
② 로그인 후 [자료이용 → 다운로드 서비스] 메뉴로 이동



③ 지료 추출 1단계 [소득소비지산→기계동향조시(2019년·) → 연간지료(지출, 2019·)]
* 예시) 가계동향조사 2019년 지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④ 자료 추출 2단계: [항목 추출(취업인원수, 가구주 연령) → 다운로드]



⑤ [데이터 미리보기]를 통해 추출 데이터를 확인



⑥ 자료 추출 3단계: [데이터 다운로드]



⑦ 추출 완료 후 마이페이지 클릭하여 [데이터 다운로드 및 이용현황] 확인



데이터 다운로드 및 이용현황



⑧ 자료명을 클릭하면 관련 상세 정보(설명 자료 등)를 다운받을 수 있음



- ⑨ 추출결과 확인
- 데이터는 text, csv 등 파일 형태로 제공, 읽기 스크립트는 sas, spss 등으로 제공



데이터 다운로드 및 이용현황

부록1 2019년 개편 전후 비교표

		201613	소득부문(분기)	지출부문(연간)	2019년 ^{00} ~
		~2016년	2017년~2019년 [®]	2017년~2018년	2019년 60~
조사	·대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림어가 포함)	일반가구 (농림어가 포함)
표본	설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목적 표본	경제활동인구조사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전용표본
	규모 기준)	월 약 8,700가구	2017년 월 약 5,500가구 2018-19년 월약 8,000가구	월 1,000가구(1/12 순환) 연간 약 12,000가구	월 약 7,200가구
 조/	中 五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연간조사표	가계부
조사	·기간	36개월	36개월	1개월	12개월(6-6-6) [®]
조사	가구 실태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 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 원별 종사상지위·성·연 령·직업·산업	-좌동-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 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 성·연령, 가구주의 직업- 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 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 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 직업·산업
항목	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재산, 이전)·비경상 소득	-좌동-	전년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재산, 이전)·비경상 소득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득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좌동-	-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분기 공표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항목	기계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	-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소득분배	5분위 배율	5분위 배율	-	5분위배율
	소득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_0	_ ⊕	_6
연간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공표 항목	7계수지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	-	-
	소득분배	5분위 배율, 빈곤율, 지니계수	_0	-	-

주: 1 기존 분기소득조사와 개편된 가계동향조사 병행 실시

❷ 2019년 조사결과는 2020년 1/4분기 결과 공표 시 소급하여 공표

③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조사를 한 후,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

② 2017년 공식 연간소득통계 및 소득분배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이관(17.12.)

⑤ 가구특성(소득 5분위, 소득구간별 등)으로만 사용

부록2 개편 연도별 항목분류 연계표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 2016년)		「기술부문: 2017~2018) 		└득부문: 2017~2019)		(통합: 2019년~)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소득			Α	소득	A	소득
B2	경상소득 경상소득			B2	경상소득	B2	경상소득
B4	근로소득			B4	근로소득	B4	근로소득
B410	가구주소득			B410	가구주소득	B410	가구주소득
B420	가구주급여소득				가구주급여소득	B420	가구주급여소득
B430	가구주상여금				가구주상여금	B430	가구주상여금
B440	배우자소득			B440	배우자소득	B440	배우자소득
B450	배우자급여소득				배우자급여소득	B450	배우자급여소득
B460	배우자상여금			B460	배우자상여금	B460	배우자상여금
B470	기타가구원소득			B470	기타가구원소득	B470	기타가구원소득
B480	기타가구원급여소득			B480	기타가구원급여소득	B480	기타가구원급여소득
B490	기타가구원상여금			B490	기타가구원상여금	B490	기타가구원상여금
B5	사업소득			B5	사업소득	B5	사업소득
B510	가구주사업소득			B510	가구주사업소득	B510	가구주사업소득
B520	배우자사업소득			B520	배우자사업소득	B520	배우자사업소득
B530	기타가구원사업소득			B530	기타가구원사업소득	B530	기타가구원사업소득
B540	주택 등 임대소득					B540	주택 등 임대소득
B6	재산소득			B6	재산소득	B6	재산소득
B610	이자소득			B610	이자소득	B610	이자소득
B620	배당소득			B620	배당소득	B620	배당소득
B640	개인연금소득			B640	개인(퇴직)연금소득	B640	개인연금소득
B650	퇴직연금소득			B540	주택 및 건물 임대소득	B650	퇴직연금소득
B690	기타재산소득			B690	기타재산소득	B690	기타재산소득
B7	이전소득			В7	이전소득	B7	이전소득
B710	공적연금			B710	공적연금	B710	공적연금
B720	기초연금			B720	기초연금	B720	기초연금
B730	사회수혜금			B730	사회수혜금	B730	사회수혜금
B740	사회적현물이전			B740	사회적현물이전	B740	사회적현물이전
B750	연말정산환급금				연말정산환급금	B750	
B760	가구간이전			B760	사적이전소득	B760	가구간이전
B770	할인혜택					B770	할인혜택
B790	기타이전소득					B790	기타이전소득
B8	비경상소득			B8	비경상소득	B8	비경상소득
B810	경조소득				경조소득		경조소득
B820	퇴직수당			B890	기타비경상소득		퇴직수당
B890	기타비경상소득						기타비경상소득
C	기타수입					C	기타수입
C1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C1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저축 및 보험탄 금액						저축 및 보험탄 금액
C150	유가증권 매각						유가증권 매각
C160 C170	보증금 회수 부동산 매각						보증금 회수 부동산 매각
C190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C2 C210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부동산담보대출					C2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부동산담보대출
C290	구동산담보내물 기타빌린 돈						구동산담모내물 기타빌린 돈
C3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C3	기다릴인 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자산이전으로 한번 무합						자신이전으로 인한 무합
10000	지근에단구비	 	1	1	I I	0000	^

	가계동향조사 (~ 2016년)	(ス	가계동향조사 출부문: 2017~2018)	(4	가계동향조사 녹두부문: 2017~2019)		가계동향조사 (통합: 2019년~)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1 21 21 2				21 21 21 2
D	가계지출	D	가계지출			D	가계지출
F	소비지출	F	소비지출			F	소비지출
Н	01.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H	01.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Н	01.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H1	곡물	H1	곡물			H1	곡물
H2	곡물가공품	H2	곡물가공품			H2	곡물가공품
НЗ	빵 및 떡류	H3	빵 및 떡류			НЗ	빵 및 떡류
H4	육류	H4	육류			H4	육류
H5	육류가공품	H5	육류가공품			H5	육류가공품
H6	신선수산동물	H6	신선수산동물			H6	신선수산동물
H7	염건수산동물	H7	염건수산동물			H7	염건수산동물
Н8	기타수산동물가공	H8	기타수산동물가공			Н8	기타수산동물가공
Н9	유제품 및 알	H9	유제품 및 알			Н9	유제품 및 알
Ι1	유지류	11	유지류			11	유지류
12	과일 및 과일가공품	12	과일 및 과일가공품			12	과일 및 과일가공품
13	채소 및 채소가공품	13	채소 및 채소가공품			13	채소 및 채소가공품
14	해조 및 해조가공품	14	해조 및 해조가공품			14	해조 및 해조가공품
15	당류 및 과자류	15	당류 및 과자류			15	당류 및 과자류
16	조미식품	16	조미식품			16	 조미식품
17	기타식품	17	기타식품			17	 기타식품
18	커피 및 차	18	커피 및 차			18	 커피 및 차
19	- 쥬스 및 기타음료	19	- - 쥬스 및 기타음료			19	 쥬스 및 기타음료
J	02. 주류 및 담배	J	02. 주류 및 담배			J	02. 주류 및 담배
J1	주류	J1	주류			J1	주류
J2	- · · · · · · · · · · · · · · · · · · ·	J2	· /· 담배			J2	· · · · 담배
K	03. 의류 및 신발	K	03. 의류 및 신발			K	03. 의류 및 신발
K1	직물 및 외의	K1	직물 및 외의			K1	직물 및 외의
K2	내의	K2	''= '', 되다 내의			K2	'르 ᆺ ᅬᅴ 내의
K3	기타의복	K3	기타의복			K3	레크 기타의복
K4	기다리고 의복관련서비스	K4	기다ㅋㅋ 의복관련서비스			K4	기디크크 의복관련서비스
K5		K5				K5	
K6	선물 신발서비스	K6	선물 신발서비스			K6	[선물 신발서비스
L	04. 주거 및 수도광열	L	04. 주거 및 수도광열			L	[선물시미 <u>급</u> [04. 주거 및 수도광열
			04. 무기 및 무고링을 실제주거비				04. 무기 및 무고링을 실제주거비
L1	실제주거비	L1				L1	
L2	의제주거비	L2	의제주거비			L2	의제주거비
L3	주택유지 및 수선	L3	주택유지 및 수선 사랑스도 미 페기모린기			L3	주택유지 및 수선 사회소드 미 페기모회크
L4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L4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L4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L5	기타주거관련서비스	L5	기타주거관련서비스			L5	기타주거관련서비스
L6	연료비	L6	연료비			L6	연료비
M	05.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M	05.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M	05.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MO	가구 및 조명	MO	기구 및 조명			MO	가구 및 조명
M1	실내장식	M1	실내장식			M1	실내장식
M2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M2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M2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M3	가정용 섬유	MЗ	가정용 섬유			MЗ	가정용 섬유

	가계동향조사 (~ 2016년)	(ス	가계동향조사 출부문: 2017~2018)	(소	가계동향조사 :득부문: 2017~2019)		가계동향조사 (통합: 2019년~)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M4	가전 및 가정용기기	M4	가전 및 가정용기기			M4	가전 및 가정용기기
M5	가전관련서비스	M5	가전관련서비스			M5	가전관련서비스
M6	가사용품	M6	가사용품			M6	가사용품
M7	가정용공구 및 기타	M7	가정용공구 및 기타			M7	가정용공구 및 기타
M8	가사소모품	M8	가사소모품			M8	가사소모품
M9	가사서비스	M9	가사서비스			M9	가사서비스
N	06. 보건	N	06. 보건			N	06. 보건
N 1	의약품	N1	의약품			N1	의약품
N2	의료용 소모품	N2	의료용 소모품			N2	의료용 소모품
N3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N3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N3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N4	외래의료서비스	N4	외래의료서비스			N4	외래의료서비스
N5	치과서비스	N5	치과서비스			N5	치과서비스
N6	기타의료서비스	N6	기타의료서비스			N6	기타의료서비스
N7	입원서비스	N7	입원서비스			N7	입원서비스
0	07. 교통	0	07. 교통			0	07. 교통
01	자동차구입	01	자동차구입			01	 자동차구입
02	기타운송기구구입	02	기타운송기구구입			02	기타운송기구구입
03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03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03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04	운송기구 연료비	04	운송기구 연료비			04	 운송기구 연료비
05	기타개인교통서비스	05	기타개인교통서비스			05	 기타개인교통서비스
06	철도운송	06	철도운송			06	 철도운송
07	육상운송	07	육상운송			07	 육상운송
08	기타운송	08	기타운송			08] 기타운송
09	기타교통관련서비스	09	기타교통관련서비스			09	 기타교통관련서비스
Ρ	08. 통신	Р	08. 통신			Р	08. 통신
P1	우편서비스	P1	우편서비스			P1	 우편서비스
P2	통신장비	P2	통신장비			P2	 통신장비
P3	통신서비스	P3	통신서비스 			P3	 통신서비스
Q	09. 오락·문화	Q	09. 오락·문화			Q	 09. 오락·문화
Q0	영상음향기기 - 영상음향기기	QO	영상음향기기 영상음향기기			QO	 영상음향기기
Q1	사진광학장비	Q1	사진광학장비			Q1	 사진광학장비
Q2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	Q2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			Q2	 정보처리장치
Q3	기록매체	Q3	기록매체			Q3	 기록매체
Q4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Q4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Q4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Q5	오락문화 내구재	Q5	오락문화 내구재			Q5	 오락문화 내구재
Q6	악기기구	Q6	악기기구			Q6	악기기구
Q7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Q7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Q7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Q8	장난감 및 취미용품	Q8	장난감 및 취미용품			Q8	장난감 및 취미용품
Q9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Q9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Q9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R0	화훼관련용품	RO	화훼관련용품			R0	화훼관련용품
R1	애완동물관련물품	R1	애완동물관련물품			R1	에완동물관련물품
R2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R2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R2	^^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R3	운동 및 오락서비스	R3	운동 및 오락서비스			R3	되세 및 에틴잉르시티드 운동 및 오락서비스
R4	문화서비스	R4	문화서비스			R4	문화서비스

	가계동향조사 (~ 2016년)	(ス	가계동향조사 출부문: 2017~2018)	(<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2017~2019)		가계동향조사 (통합: 2019년~)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R5	복권	R5	복권			R5	복권
R6	서적	R6	서적			R6	서적
R7	기타인쇄물	R7	기타인쇄물			R7	기타인쇄물
R8	문구	R8	문구			R8	문구
R9	단체여행비	R9	단체여행비			R9	단체여행비
S	10. 교육	S	10. 교육			S	10. 교육
S1	정규교육	S1	정규교육			S1	정규교육
S2	초등교육	S2	초등교육			S2	초등교육
S3	중등교육	S3	중등교육			S3	중등교육
S4	고등교육	S4	고등교육			S4	고등교육
S5	학원 및 보습교육	S5	학원 및 보습교육			S5	학원 및 보습교육
S6	학생학원교육	S6	학생학원교육			S6	학생학원교육
S7	성인학원교육	S7	성인학원교육			S7	성인학원교육
S8	기타교육	S8	기타교육			S8	기타교육
Т	11. 음식·숙박	Т	11. 음식·숙박			Т	11. 음식·숙박
T1	식사비	T1	식사비			T1	식사비
T5	숙박비	T5	숙박비			T5	숙박비
U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U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U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U0	이미용서비스	U0	이미용서비스			UO	이미용서비스
U1	이미용 기기	U1	이미용 기기			U1	이미용 기기
U2	위생 및 이미용용품	U2	위생 및 이미용용품			U2	위생 및 이미용용품
U3	시계 및 장신구	U3	시계 및 장신구			U3	시계 및 장신구
U4	기타개인용품	U4	기타개인용품			U4	기타개인용품
U5	복지시설	U5	복지시설			U5	복지시설
U6	보험	U6	보험			U6	보험
U7	기타금융	U7	기타금융			U7	기타금융
U9	기타서비스	U9	기타서비스			U9	기타서비스
W	비소비지출	W	비소비지출	W	비소비지출	W	비소비지출
W1	경상조세	W1	경상조세	W1	경상조세	W1	경상조세
W2	비경상조세	W2	비경상조세	W2	비경상조세	W2	비경상조세
W3	연금기여금	W3	연금기여금	W3	연금기여금	W3	연금기여금
W4	사회보험	W4	사회보험	W4	사회보험	W4	사회보험
W6	이자비용	W6	이자비용	W6	이자비용	W6	이자비용
W7	가구간 이전지출	W7	가구간 이전지출	W7	가구간 이전지출	W7	가구간 이전지출
W8	비영리단체로 이전	W8	비영리단체로 이전	W8	비영리단체로 이전	W8	비영리단체로 이전
Х	기타지출	X	기타지출			Χ	기타지출
X1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X1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X1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X2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X2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X2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ХЗ	자산이전으로 인한 지출	ХЗ	자산이전으로 인한 지출			ХЗ	자산이전으로 인한 지출

- * MDIS 제공용 항목 기준임
- ** 코드는 통계청 내부 집계용 코드명으로 MDIS 다운로드 추출 코드명과 다름에 유의

부록3 주요 용어 해설 및 인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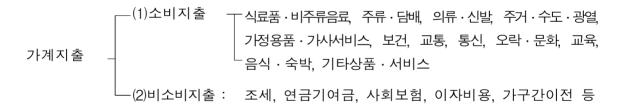
가, 주요 용어

1) 소득

가구가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자본투자의 대가, 타 가구나 경제주체로부터 경상적 이전 및 기타 비경상적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포함. 단,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하지 않음

2) 가계지출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입 대가로 지출한 소비지출과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등과 같이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이나 가구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지출인 비소비지출로 구성



※ 소비지출은 UN 등에서 권고하는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1999)에 따라 분류

3) 처분가능소득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에서 소비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소득 - 비소비지출)

4) 흑자액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5) 흑자율

처분가능소득에서 흑자액이 차지하는 비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6) 평균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7) 균등화 처분가능소득(OECD, Wave7 기준)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목적으로 OECD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mathbf{0}}$ +공적이전소득 $^{\mathbf{0}}$ -공적이전지출 $^{\mathbf{0}}$) / $\sqrt{$ 가구원수
 - 1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 2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 3 공적이전지출 : 경상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 4 사적이전지출 : 가구간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다른 가구와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 단위(√가구원수)로 배분한 소득

나. 조사대상 및 인식범위

1) 소 득

-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경조소득 등) 구분
- 소득의 인식대상은 현금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인한 현물소득도 포함
 - ▶ 사업장으로부터 인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처리
 - · 소득 : 사업소득
 - · 지출 : 사업장에서 인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지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 ▶ 사업주가 피용자에게 현금급여를 대신하거나 또는 현금급여에 추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 소득 : 근로소득
 - · 지출 :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여 지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2) 지 출

- 가구에서 소비지출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시점에 소비지출 인식
-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타가구에 이전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지출가구에서 '선물'처리

3) 현물소득

- 현물은 구입시점 혹은 수령시점에 이미 소비지출 된 것으로 간주하며, 지출은 시장에서 해당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지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단, 가구간 이전은 현물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구입시점에 이미 소비지출된 것으로 간주함

[제외] 수혜대상이 명백하게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

- (예)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운동시설, 목욕시설 등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 정부,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특정계층(장애인, 생활보호대상 등)을 대상으로 이전 받은 현물은 이를 받는 가구에서 해당상품 및 서비스 소비지출로 처리. 단,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공단부담금, 무상교육, 보육비, 국방서비스 등 모든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집합적 서비스는 제외
 -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료,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 ·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급여를 대신하여 현물로 받는 경우는 정부와 가구관계가 아닌 고용주체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급여 현물에 해당되며 사회적 현물이전에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

다. 주요 항목 설명

구	분	대분류	분류 내용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로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총액(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금, 보너스 등)
		사업소득	총수입액에서 일체의 사업지출(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전기료 등)을 차감한 금액
		주택 등 임대소득	토지 이외 주택, 건물 및 기계장비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
가계	경상 소득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재산소득, 토지임대소득 등)
소득		이전소득	생산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니라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가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
		공적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연말정산 환급금
		사적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등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경조소득, 퇴직수당, 만기이전에 사고로 보험탄 금액, 실비보험 탄 금액 등)
	소비	식료품 · 비주류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신동물, 염건수산동물, 가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가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주류·담배	주류, 담배
		의류·신발	직물 및 외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 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가계 지출	지출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기록매체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복지시설, 보험, 기타 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 지출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지출 분류체계 세부내용

- 상세 세부내용은 「이용자용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 설명서」참조

대분류	중분류	분류내용
	곡물	일반적으로 굽거나 찌는 등 가공을 거쳐야 섭취가 가능한 곡류
	곡물가공품	곡물을 가루화한 것, 익힌 것 또는 곡물을 주원료로 하여 공업적으로 가공한 식품
	빵 및 떡류	제과점 및 떡집 등에서 구입한 케이크, 빵류 및 떡류
	о г	어류 이외에 신선, 냉동, 냉장된 식용동물의 고기 및 뼈, 내장 등의 부산물(식용으로
	육류	구입한 살아있는 동물 포함)
	육류가공품	육류를 소금이나 간장 등에 절인 것, 말린 것 등 및 육수 등
	신선수산동물	삶거나, 찌거나, 굽거나, 절이는 등의 가공하지 않은 수산동물류
	염건수산동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 또는 반건조한 수산동물
식료품	기타수산동물가공	염건수산동물 이외의 가공한 수산동물류
	유제품 및 알	동물의 젖, 알 또는 이것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비주류	유지류	식물 또는 동물에서 채취한 식용기름
음료	과일 및 과일가공품	나무 등 식물을 가꿔서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주로 수분이 많고 단 맛
		또는 신 맛이 나는 것
	채소 및 채소가공품	과일채소를 제외하고 밭에서 자란 것(서류 포함)
	해조 및 해조가공품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공하지 않은 바다, 강 등에서 자라는 조류 및 이를 말리거나, 굽거나, 가루 내어 가공한 것
	당류 및 과자류	단맛이 나는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음식조리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조미료류
	기타식품	위의 특정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식품
	커피 및 차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과일주스, 야채주스, 생수, 기능성 음료 및 기타음료
주류.	주류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음료
담배	담배	담뱃잎을 건조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직물 및 외의	의복 및 직물에 대한 지출
	내의	속옷 및 잠옷에 대한 지출
의류	기타의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등의 기타 의복류
신발	의복관련서비스	의복수선, 세탁, 리모델링, 맞춤 등 의복관련 서비스
선일	신발	발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 가장 바깥 부분에 착용하는 것
	신발서비스	신발의 세탁, 리모델링, 맞춤 등 관련 서비스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주거	실제주거비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T/1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폐기물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
수도	기타주거관련서비스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를 위한 공동비용 등 주거관련서비스
광열	연료비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
	가구 및 조명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출
	실내장식	주택 내부를 장식하기 위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지출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구 및 장식용품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지출
가정용품	가정용 섬유	가구에서 이용되는 침구, 수건, 커튼 등 섬유제품 및 관련서비스
	가전 및 가정용기기	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내구재
가사	가전관련서비스	대형 및 소형가전의 수리, 임차 및 점검 관련 서비스
서비스	가사용품	주방에서 사용되는 주방용 준내구재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구, 가전, 식기류를 제외한 가구에서 사용하는 비가사소모품
	가사소모품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소모품
	가사서비스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서비스에 관련된 지출

대분류	중분류	분류내용
	의약품	처방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사 및 의사로 부터 구입한 약품
-	의료용 소모품	위의 의약품 이외에 안대, 식염수 등 보건의료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 신체의 교정 및 유지에 필요한 용품 및 기구
נים	외래의료서비스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지출
보건 -	치과서비스	입원하지 않는 환자가 지불하는 치과진료 및 치료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	기타의료서비스	위의 항목 이외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의 의료관련서비스
	입원서비스	입원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는 기간에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
	자동차구입	사람 및 화물운송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의 구입에 대한 지출
	기타운송기구 구입	자동차 이외에 사람의 이동 및 화물운송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구입에 대한 지출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승용차, 오토바이 등 가정용 운송기구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	운송기구 연료비	승용차, 오토바이 등 가정용 운송기구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연료 비용
교통	기타개인교통 서비스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개인교통 및 운송관련 비용
	철도운송	기차 및 지하철 등의 운송수단 이용에 따른 서비스비용
	육상운송	버스, 택시 등 철도 이외의 육상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서비스 요금
-	기타운송	위에 분류되지 않는 항공, 여객선 및 혼합교통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여객 이외에 기타 화물 등 관련 서비스
	우편서비스	서신을 격지에서 주고받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
통신	통신장비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장비의 구입
	통신서비스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영상음향기기	TV,오디오 등 영상 및 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사진기, 캠코더 등 기록 및 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록매체	외장하드, 공CD-ROM, 메모리, 필름, 테이프 등의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영상음향기기, 사진 및 광학장비, 정보처리기기 관련 수리 및 대여서비스
	오락문화 내구재	보트, 캠프카, 행글라이더, 열기구 등 야외용 내구재 오락기구 및 탁구대, 당구대 등 실내스포츠용 오락기구
	악기기구	피아노, 오르간, 플루트 등 악기기구
	오락문화 내구재 유지 및 수리	오락문화 내구재 및 악기의 유지보수 및 대여 서비스를 위한 비용
오락	장난감 및 취미용품	장난감, 취미용품 등에 대한 지출
· 문화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등산, 낚시, 사냥용품, 운동용품, 오락문화용품 서비스에 대한 지출
正好	화훼관련용품	꽃, 화초, 정원 관련 식물 및 소모품
	애완동물관련용품	애완동물의 구입, 애완동물 먹이, 사육장(어항) 등 관련용품 구입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화초, 애완동물의 관리, 치료, 미용 등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
	운동 및 오락서비스	각종 놀이공원, 서커스장, 운동경기장 등의 이용
	문화서비스	전시시설,공연시설,방송수신료,문화용품의 대여료 등
	복권	당첨금이 따르는 복권의 구입
	서적	교과서, 참고서, 교양서적, 전집류 등 모든 서적류
	기타인쇄물	서적이외에 신문, 잡지 등 기타 인쇄물
	문구	가구에서 이용하는 문구류 일체
	단체여행비	여행관련 품목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항목별 분류가 불가능한 단체 여행비

대분류	중분류	분류내용
	정규교육	정규교육기관에서 받은 수업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
	초등교육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등교육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고등교육	2년제 대학이상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학생 및 성인의 정규교육기관 이외에 학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지출
	학생학원교육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에 대한 지출
	성인학원교육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이 직업, 어학능력 향상 등을 위해 수강하는 교육(성인대상 개인과외는 해당항목에 포함)
	기타교육	위의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훈련 및 연수서비스
음식	식사비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 및 식사를 위한 부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지불하는 비용(외식비, 단체제공식 등)
숙박	숙박비	호텔, 모텔, 여관, 장 등의 숙박전문시설과 민박, 홈스테이 등의 숙박시설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관련 서비스
	이미용 기기	이미용 관련 전기제품
	위생 및 이미용용품	위생, 이미용에 관련된 상품의 구입비용
	시계 및 장신구	시계, 장신구 등 구입에 대한 지출
기타상품	기타개인용품	가방류, 우산 등 신변용품의 구입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복지시설	유아, 노인, 장애인, 산모 등 가족 돌봄을 위탁한 경우 지불하는 비용
서비스	보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화재보험 및 운송 관련 보험 등 기타보험(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건강관련보험(사망보험, 상해 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실비보험)으로 구분
	기타금융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서비스	위의 모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지출
	경상조세	경상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소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 등)
	비경상조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자동차 취등록세, 과태료 등
m	연금기여금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기여금
비소비 지출	사회보험료	법률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사회보험료
1 2	이자비용	주택·신용 담보대출이자, 학자금 대출이자 등
	가구간 이전지출	다른 가구(부모·자녀·친지 등)에 지출하는 금액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기부금, 노조·친목회비 등 단체회비

부록4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 □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에 대한 실태파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여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초점
 - ① (행정자료 보완여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등 12개 기관 30여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보완함에 따라 고소득자 포착 가능
 - ② (가구원 정의) 떨어져 있는 가구원 포함 여부에 따라 가구원수와 취업자 수에서 차이 존재
 - 가계동향조사는 학업, 취업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 별도의 1인가구로 조사하는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따로 사는 가구원도 포함

□ 비교표

구 분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목적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지출 동향을 파악하여 국민소득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을 파악 하여 사회경제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공표주기	분기(소득, 지출), 연간(지출)	연간
조사대상기간	조사 당월의 소득・지출	· 소득·지출 : 1. 1. ~ 12. 31.(1년간) · 가구구성·자산·부채 : 3. 31. 기준
표본규모	약 7,200가구	약 20,000가구
조사단위	가구	가구
조사방법	· (가구실태)조사담당자 면접방식 · (가계수지)응답자 기입방식	· 도급조사원 방문면접 · 면접조사, 인터넷조사_응답자 기입방식
조사대상가구	전국에 거주하는 1인이상 일반가구	 전국에 거주하는 1인이상 일반가구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포함

부록5 자주하는 질문

1.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군구 등 지역	별
	소득 및 지출	자료 분석이 가능한지?	

- □ 가계동향조사는 7,2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및 도시 가구의 소득과 지출 등의 통계 자료 생산에 적합하도록 표본 추출 등 조사 설계됨
- □ 전국 및 도시 전체 단위가 아닌, 지역(시,군,구)별 통계자료는 표본 규모 협소 등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아 작성하지 않음

2. 가계동향조사 미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분석이 가능한지?

-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한 패널 분석은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횡단면 조사) 가계동향조사는 해당 시점의 우리나라 일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단면 조사로 패널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 등이 표본 설계 시 고려되지 않음
 - (중복률) '19년 개편 후 6-6-6 표본체계 하에서의 유지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40% 내외로 패널 분석 결과 일반화(대표성) 한계 존재
- □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분석은 불가하며, 패널 분석이 가능한 가구별 연계키(고유 식별키)* 또한 제공하지 않음
 - * MDIS 상의 가구일련번호 칼럼은 가구별 연계가 가능한 고유 식별키가 아닌, 분석 편의를 위한 임의의 단순 가구 번호임

3.	가계동향조시는 '17년 이후 연간 소득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에 4개 분기 소득 평균값을 연간 소득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연간소득) '17년 개편 이후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시의성있는 분기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통계연간 소득을 작성·공표하지 않음. '17년 이후 통계청 공식 연간소득 및 소득분배지표 통계는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임
- □ (연간소득 추정 방식) '16년 이전 가계동향조사 연간 소득 추정 방식은 가구별로 금액과 가중치를 집계한 후 전체 가구 평균값을 작성, 이에 4개 분기 전체 가구 평균값은 연간 소득값과 일치하지 않음

4.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한다고 하는데, 어떤 통계를 이용하면 되는지?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의 기초자료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를 활용한다고 명시
 - 해당 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
 - 2019년 이후: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2019년~)> ⇒ <도시(명목),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 다만, 통계청에서는 해당 통계를 분기 기준으로 공표함에 그치며,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 항목 및 산정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은 사업 시행 관련 부서(국토부(공공주택총괄과), LH 등) 에서 정하여 활용하므로 각 기관에 문의해야 함

- 5.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가중치 항목이 있습니다. 가중치는 Data값이 대표하는 가구수라고 하는데 각 변수마다 적용 해야 하나요?
- □ 가계동향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일반가구의 소득·지출 등 가계수지 추정에 적합하도록 표본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7,200 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매월 해당 가구의 소득·지출 모든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 표본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가중값을 지님
- □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는 해당 표본(응답)가구와 가구특성, 소득 금액 등이 동일한 가구가 가중치만큼 존재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면, 한 가구의 가중치가 2,500이라면 이 가구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2,500가구가 존재한다는 의미임
 - 표본 가구 조사자료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 대한 추정값이 될 수 있도록 분석 시 모든 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야 함